

주식회사 MYART AUCTION 경매약관

제1조 (목적)

- ① 본 경매약관(이하 '약관'이라 칭함)은 주식회사 마이아트옥션(이하 '당사'라 칭함)이 경매를 함에 있어 모든 진행과정에 따른 절차 및 제반 기준을 말하며, 당사의 경매는 본 약관에 의거합니다.
- ② 본 약관은 경매 관련자들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에게 경매에 출품을 의뢰하여 위탁하는 자, 경매출품의 입찰을 희망하는 자, 또한 구입을 의뢰를 하는 자, 당사와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자, 그 밖의 경매에 관계되는 자는 본 약관을 승인하고 그 사항에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조 (용어정의)

- ① "위탁자"라 함은 본인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 본인 소유의 작품을 당사의 경매방식에 의거하여 출품 및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등 모두를 말하며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② "응찰자"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자율적 의사로 참여하여 낙찰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등 모두를 말하며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③ "낙찰자"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현장참여 또는 서면, 전화응찰 작품을 낙찰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등을 말하며 '낙찰확인서'에 확인서명을 해야 합니다.
- ④ "시작가"라 함은 당사의 경매사가 작품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⑤ "낙찰가"라 함은 당사의 경매사가 호가를 완료한 후 경매봉을 두드리고, 최종 응찰자의 패들번호와 최고 응찰가를 호가하여야 낙찰이 확정되는데 이때 호가하는 최고 응찰가가 낙찰가입니다. 또한 낙찰자가 당사에게 지불해야하는 낙찰가를 낙찰대금이라 칭합니다.
- ⑥ "호가"라 함은 당사의 경매사가 경매 시 부르는 작품의 가격과 상승범위를 말합니다.
- ⑦ "구매가"라 함은 낙찰가에 본 약관에 명시한 구매수수료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 ⑧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을 낙찰 받은 낙찰자가 경매 계약 또는 경매약관에 따라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⑨ "위탁수수료"라 함은 위탁자가 출품하고 낙찰된 작품에 한하여, 위탁자가 경매 계약 또는 경매약관에 따라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⑩ "내정가"라 함은 당사와 위탁자가 사전에 비공개로 합의한 최저 낙찰예상가로 이 금액부터 판매가 가능합니다.
- ⑪ "추정가"라 함은 당사가 미술시장의 거래가격 및 동향, 가치와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작품가를 추정한 것으로 하한가와 상한가로 기입합니다.
- ⑫ "회원"이라 함은 당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⑬ "이용자"라 함은 당사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뢰인, 회사의 경매에 참여하거나 회사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자, 응찰자, 낙찰자 또는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회원)

- ① 당사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당사의 정회원이 되며, 납부한 연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회비 납부 후 1년이 초과되면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자동 하향조정이 됩니다.
- ② 정회원은 도록과 온라인상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사가 시행하는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③ 준회원은 무료회원으로 홈페이지 이용 및 온라인상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으며, 경매응찰 자격은 없습니다.
-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자격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 전시장 및 경매장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경우
 2. 연회비,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회원명의 대여 등 경매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배하거나, 기타 당사가 판단하여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 (경매의 방식)

- ① 당사는 경매 전에 응찰 희망자들이 경매작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회(프리뷰)를 개최합니다.
- ② 당사는 경매일자,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이 성립된 작품에 대해서 당사는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필요시 유찰품에 대해서 위탁자에게 인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매 이후에도 이와 같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경매참관과 작품의 위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당사는 이들의 성명과 신원 등 개인정보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의뢰 희망자는 위탁시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찰이 되더라도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④ 당사는 경매도록에 기재된 작품 번호(Lot No.)순으로 이뤄집니다. 단, 당사는 사전통지 없이 예정된 작품의 경매철회를 할 수 있고, 동일 번호의 다수 작품을 분할하여 경매에 부치거나 다수 번호의 작품을 한 번호로 일괄 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 ⑤ 당사와 위탁자는 경매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경매 작품의 최저 낙찰가격인 내정가를 정합니다. 또한 위탁자와의 합의에 따라 내정가는 경매 시작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⑥ 경매사는 위탁자와 합의한 내정가를 지키기 위하여 시작가에서 내정가에 도달할 때까지 경매사도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⑦ 호가는 전적으로 경매사의 재량에 의하며 경매사는 경매진행 시 호가 증가분을 미리 제시합니다. 응찰자는 구두로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매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내정가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내정가보다 낮은 금액 또는 높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⑧ 당사는 경매응찰에 참고가 되도록 경매 작품에 대하여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를 정하여 응찰자에게 제공합니다. 단, 추정가는 경매의 참고를 돕기 위한 가격일 뿐 당사에서 책임을 지는 가격이 아니며, 낙찰가와도 무관합니다. 또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경매사는 최고 응찰가를 1회 이상 부르고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고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호명함으로써 낙찰자와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⑩ 경매사는 응찰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응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효 응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해당 작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경매사가 다음 작품의 경매를 착수한 후에는 누구도 이전 경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5조(응찰과 낙찰)

① 경매에는 당사의 회원 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② 응찰은 공개응찰(현장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동일한 응찰가를 제시한 경우 서면응찰, 공개응찰, 전화응찰 순으로 낙찰우선권이 부여됩니다.

③ 공개응찰은 정회원으로서 당사 소정의 응찰등록서를 작성한 후 응찰 패들을 교부 받아야 응찰 자격이 있습니다.

④ 회원은 당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한 일시까지 참여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서면, 전화응찰이 유효합니다.

⑤ 낙찰은 내정가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최고액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돌아갑니다.

⑥ 낙찰자는 낙찰품이 문화재 및 유물일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낙찰품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으로 숙지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⑦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작품에 대하여 응찰할 수 없습니다.

제6조(작품의 위탁)

① 위탁자는 출품신청서(위탁계약서)를 제출하고 작품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판단으로 위탁의뢰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판단으로 작품의 진위에 관한 시비가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사의 경매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작품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자와 당사 간에 위탁품에 대한 내정가가 합의되지 못한 경우

② 위탁자는 작품위탁 시에 경매출품에 관련된 기본경비(도록 등재비용, 일반감정료 등)에 해당하는 기본 출품료로서 작품 1점당 100,000원을 당사에 선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찰시에도 출품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 당사는 위탁 작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프리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배접 및 표구 등 작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위탁자에게 상의 할 수 있으며 합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할시 비용부담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④ 위탁자 또는 당사가 위탁품에 대한 특별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사 규정(특

별 감정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자는 특별감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찰시에도 감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⑤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1.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하는 작품에 대하여 유일한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2. 위탁자는 위탁품에 대하여 제3자가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탁자는 낙찰과 동시에 위탁품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당사가 위탁받은 위탁품을 재검토하여 (제 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발생시)경매에 출품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당사는 이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작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위탁자의 인수 지연으로 발생하는 작품의 손상, 분실 등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통보 후 3일 경과 후에는 당사 규정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보관료는 작품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상이하 며 당사가 판단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5. 위탁자는 위탁 작품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위탁 작품 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작품임이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당사가 지급한 위탁대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대금 전 액을 당사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당사가 입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손해 일체 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추정가 평균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위탁자는 유찰된 작품을 경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고, 경매일로부터 15일 경과 후에 당사 규정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의 위탁 품에 대해서 분실 및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위탁 작품이 낙찰되는 경우 당사는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작품과 관련한 낙찰대금 을 낙찰자에게 수령하여 수수료와 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만 3억원 이상의 작품에 대하여는 28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7조(응찰자의 의무)

- ① 당사가 제작한 경매도록에 기재된 작가명, 작품명, 재질·재료, 크기, 출처 등 모든 내용은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 ② 당사는 경매작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합니다. 따라서 응찰희망자는 경매 이전인 전시회 기간 내에 충분히 응찰희망작품의 훼손 및 수리 복원 여부, 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사는 응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 경매를 진행하며 본인이 낙찰 받은 낙찰품에 대해서는 낙찰 후 작품에 대한 단순변심 또는 도록의 인쇄상태(색상, 크기 등), 오기誤記(사이즈, 작품명 등)로 인한 이유로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응찰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제 9조 참조)
- ③ 당사가 경매작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과 작품이미지(도판) 가운데 당

사는 약관 10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수수료 및 세금)

① 위탁 수수료) 위탁수수료는 낙찰가가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세별도), 3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0만 초과액×10%(부가세별도)로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예1) 낙찰가 2,500,000원일 경우 $2,500,000원 \times 15\% = 375,000원$ 의 위탁수수료와 부가세 37,500원을 합산한 412,500원이 총 위탁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500,000원(낙찰가) - 412,500원(위탁수수료 + 부가세) = 2,087,500원$ 이 됩니다.

예2) 낙찰가가 10,000,000원일 경우 $(3,000,000원 \times 15\%) + (7,000,000원 \times 10\%) = 1,150,000원$ 의 위탁수수료와 부가세 115,000원을 합산한 1,265,000원이 총 위탁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10,000,000원(낙찰가) - 1,265,000원(위탁 수수료) = 8,735,000원$ 이 됩니다.

② (양도세)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부과는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단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며, 매입 원가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화·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 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낙찰수수료) 낙찰수수료는 일괄 낙찰가의 15%(부가세별도)입니다.

제9조(대금 납부와 작품인도)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낙찰가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경매 작품 대금, 경매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총 구매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다만 낙찰가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총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③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별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당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 작품에 대한 총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약관 제9조3항에 의거하여 낙찰가의 위약벌로 30%를 지급하여 합니다. 위 위약벌은 당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⑤ 당사는 위탁자가 위약을 하여 낙찰을 취소할 경우, 위탁자에게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⑥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당사 지정의 은행계좌 송금, 자기앞수표, 현금 등으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농협 317-0009-8112-11 (주)마이아트옥션]

⑦ 낙찰자는 응찰 전에 당사와의 합의에 따라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⑧ 낙찰자는 대금완납 후 7일 이내에 구매한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작품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당사 규정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금 완납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작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작품의 분실 및 손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보증과 원상회복)

① 당사는 경매작품에 대하여 도록상 **첫 줄에 크게 인쇄된 표제사항(작가 또는 작품제목(작가를 알 수 없는 도자기 또는 공예품에 한함))**에 대하여만 중개인으로서 보증합니다. 그 이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기타 회사 임직원이 구두 또는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다.

② 낙찰자가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③ 중개인으로서 당사의 보증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당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낙찰대금과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낙찰자가 당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과 작품 번호, 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당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당사에 인도해야 합니다.

④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회사와 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또는 전문기관 2곳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지급하도록 합니다.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은 낙찰자와 당사 모두가 인정한 사람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추가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제외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1. 경매 당시 경매작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수정되었거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2.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경매 현장에서 고지한 경우

3. 경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방법이나 비현실적인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검증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해야 하

는 경우.

4. 약관 제 10조 4항에 의거, 2-3곳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⑥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위탁자도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습니다.

⑦ (양도 불가)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작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

⑧ (보증 책임의 한계)

당사의 보증 책임은 낙찰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이자나 통화가치 변화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운송과 보험)

① (운송) 위탁자는 낙찰자가 작품의 운송을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운송 및 보험가입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 위탁자는 당사에 위탁 작품을 인도할 때로부터 당사에서 보관관리를 중지하는 시점까지, 또는 경매일로부터 5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당사가 만족할 만한 보험증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보험 가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당사의 책임한계와 권한)

① 경매작품의 진위시비 및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 계약된 위탁 작품을 경매에 출품하지 않을 수 있고,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외에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입찰신청이 있었고 당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실수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응찰이 경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약관의 개정 등)

① 당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록·위탁계약서·응찰등록서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재합니다.

② 당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그 중요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③ 당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는 약관의 개정 내용의 조항 및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술하여 적용 7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공지하도록 합니다.

제14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당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당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③당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서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개정약관은 2018년 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